

만기고객보험료할인 특별약관

제1조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우리회사에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장기손해보험 계약의 보험계약자가 새로운 장기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라 합니다.)

1. 보험기간 종료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종료나이, 재가입계약의 경우 재가입종료나이)이 6개월 이내인 유효한 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종료된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계약.
2. 이미 납입한 보험료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계약.
단, 이미 납입한 보험료 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영업보험료(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임의 또는 수시로 납입하는 보험료는 제외)를 대상으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계약에 대해서는 회사에 가입한지 1년 이상 경과한 유효한 다른 장기손해보험 계약이 있을 경우 그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총액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제2조 (보험요율의 적용)

이 특약을 부가하는 장기손해보험 계약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할인한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제3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 제○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보통약관에 부가된 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